

2003. 11. 18.

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1. 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안
2. 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안
3. 계룡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안
4.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안
5.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안
6. 계룡시공인조례승인안
7. 계룡시행정동·리의명칭·관할구역및동·리장정수에관한조례승인안
8. 계룡시면·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안
9. 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안

전문위원 김 세 현

계룡시의회공인조례승인안

1. 제안일자 2. 제안자 3. 제안이유 4. 주요내용

⇒ 계룡시장이 제출한 「의안」의 내용과 중복되므로
보고생략

※ 이하 모든 「의안」에 대하여 상동과 같이 하고자 함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 등 9건의 승인안은 충남 계룡시 도·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03. 7. 18 공포됨에 따라 계룡시 개청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할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장이 선결 처분한 사항임.

○ 주요 검토내용은

-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의회에서 사용할 공인의 규격, 등록, 관수방법, 공고요령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승인안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사무기구와 직원정수,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승인안

□ 검토의견

- 우리 시에서 제·개정하는 각종 조례, 규칙 등의 자치법규와 예산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이며, 조례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안

□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계룡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한 것으로,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승인안

☐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룡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이 또한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공인조례승인안

☐ 검토의견

-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에서 사용할 공인의 규격, 등록, 관수방법, 공고요령 등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행정동·리의명칭·관할구역및동·리장정수에관한조례승인안

☐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행정 동·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·리장 정수를 정한 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면·동·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승인안

☐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면·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과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수입증지조례승인안

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첨부하는 수입증지의 조제 및 발행과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영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